

기초융합교육원 운영위원회 규정

(제정 2017. 8. 1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기초융합교육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협의·심의하며, 제1호의 경우 그 결과를 학사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1. 교양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육과정 강좌평가 및 교육평가
3.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교양교육 발전계획
4. 우수교수, 비전임 교수, 시간강사 추천
5. 기초융합교육원 예산 및 재정지원금의 활용방안
6.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초융합교육원 원장과 각 교육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의 교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5조(운영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필요시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기초융합교육원 행정지원실장이 간사가 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]